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단1272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우상, 류한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21. 6. 2.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C은 원고에게 22,550,796원 및 그중 4,233,928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6. 23.자 2020차전4823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은 2020. 8. 19. 확정되었다.

나. 한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21. 6. 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E, C, 피고, F, G이 있었다. 위 상속인 5인은 2021. 6.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21. 6. 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는 원고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약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이 상속한 지분에 관하여 C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 이혼한 후 망인의 거주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망인이 2021년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호하며 홀로 모셔왔다. 이에 망인은 생전에 가족이 모일 때마다 “피고가 너무 고생을 하니 본인이 사망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망인의 다른 자녀들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던 중 망인이 2021. 6.경 사망하였고, C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C은 자신의 채무 사정에 대해 전혀 말한 바 없었다. 결국 피고는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협의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분할협의를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3. 판 단

가. 피고를 제외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피고는 2007.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망인과 함께 살면서, 다른 자식들을 대신하여 식사, 빨래, 병원 왕래, 집안 청소, 대소변까지 모든 일을 혼자 돌보면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돌아가시겠다는 망인의 소원을 이루어주었다. 망인은 명절 또는 생신 때 자신의 병간호를 위하여 수발이 된 피고에게 고맙다며, 자기가 죽으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물려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 자식들 전원은 피고에게 물려주는데 모두 동의하였다”라는 내용의 ‘동의서’(을 제2호증)를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위 동의서는 결국 “피고가 피상속인인 망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망인을 간호하여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음을 이유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바 있다”라는 내용인 점, 망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이 없어서 공동상속인들의 위와 같은 협의는 사실상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협의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앞서 피고의 기여분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여분 협의 결과 상속재산에 대해 피고만이 구체적 상속분을 갖게 되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귀속시킨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기여분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 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여분 협의에 따라 C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 결과 C이 어떠한 상속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여분에 대한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있었음이 입증된 이상 피고가 자신의 구체적인 기여 정도를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동의서(을 제2호증)는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낮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하였다’라는 사실이 기여분 협의의 신빙성을 탄핵할 근거가 될 수는 없고(특히 위 동의서는 피고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위 동의서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제출되었다고 볼 증거나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익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I(건물내역 생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H 대 201.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J호 벽돌조 35.9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01.4분의 25.175 끝.

